

Q7

산불 실화 및 방화자가 받게 되는 처벌과 관련 법규를 알려 주세요.

A 산불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.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 가해자는 최대 7년 이상, 15년 이하의 징역의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. 그리고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하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산림보호법

제53조(벌칙)

-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57조(과태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2.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(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1. 제34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
 2.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[불을 피워도 된다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-註]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
 3. 제34조제4항의 [관할관청의-註]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, 인화 물질,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